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2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3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4.)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정찬식)

가. 제안이유

-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용어 정비와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신청대상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
- 통장자녀장학금 신청 대상 정비(안 제2조제4항 삭제)
- 타장학금 수혜자의 통장자녀장학금 수령액 기준 정비(안 제5조제2항)
 -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와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15. ~ 2024. 4.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본 안건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임.
-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대부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따라 2020년까지는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해 오다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21년 이후 제한이 해제되었음.
 - 현재 우리구의 통장자녀장학금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

- 지급금액(1인당) :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한학기 지급액)

※ 연간지급액 :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 2023년 지급인원 및 집행액 : 63명, 29,085천원

<최근 3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계	집행률	상반기	하반기	계	집행률	상반기	하반기	계	집행률
인원	51	43	94	54.2%	53	33	86	51.2%	30	33	63	37.6%
금액	21,955	20,063	42,019		24,033	15,588	39,621		14,118	14,967	29,085	

※ 통장 연령 고령화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생 대상자 감소로 최근 3년 간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률 평균 47.6%

- 본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통장자녀의 과도한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을 완화하여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대학생 등록금이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지, 다른 자치구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①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1. 지역발전·반사회 운영·질서·환경개선·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② 통장은 해당 동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장학금의 신청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① <u>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으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u></p> <p>1. (생략)</p> <p>3. (생략)</p> <p>② 통장은 해당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해당 동장에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장학금의 신청은 통장 1명에 1자녀로 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 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p>	<p>제2조(장학금의 신청대상 등) ① <u>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 해당 동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학금----- -----.</p> <p>③ ----- 한 명 당 자녀 한 명으로----- -----.</p> <p><삭 제></p>

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장학생의 선발) ① (생략)

제5조(장학금) ① (생략)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3조(장학생의 선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5조(장학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경우 비용 발생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연평균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서기 민청(02-3423-5194)